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13817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 고	갑	
피 고	을	
사 건 본 인	1. 병	
	2. 정	
변 론 종 결	2019. 9. 17.	
판 결 선 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 병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31. 10. 18.까지는 월 6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4. 6. 30.까지는 월 30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2017. 11.경 폐업한 후 친구를 도와 관련 계통에서 일하고 있고, 피고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경 회사 직원인 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다. 피고는 2017. 2.경 우연히 원고의 노트북을 보다가 원고와 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라. 피고는 경영악화로 채무독촉이 심해지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이혼을 하자는 원고의 요구로 2017. 3. 23.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후 회사 부도와 이혼은 별개라는 조언을 듣고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다.

마. 원고는 2016년 하순경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가끔 귀가하였고, 피고는 대출금 연체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이르자 2017. 11.경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바. 원고는 재차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거부할 경우 피고가 하려는 파산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위협하였다. 피고는 마지못해 2018. 6. 19. 협의이혼신청서류 접수하였으나, 위 확인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6. 10.경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기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8. 8.경 먼저 연락을 한 기를 통해 원고와 기의 관계도 알게 되었다.

아. 원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는 피고와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다툼 후 2018. 10. 11. 일방적으로 사건본인 정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 호텔과 모텔 등지에서 기와 함께 지냈고, 피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 원고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끝에 2018. 11. 23. 사건본인을 데려올 수 있었다.

자. 원고는 2018.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2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안정감 있는 생활을 위해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부분이 없어 혼인생활 내내 불행하였고, 원고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피고와 불화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2016년 말경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다. 이후 피고와 두 차례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고, 서로 원망 가득한 발언과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혼거부는 결국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와 아무런 계약 없는 별거상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원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지 여부

원고가 혼인 중 발생한 여러 갈등으로 인한 애정과 신뢰의 상실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2017. 11.경 거주지 아파트 경매로 실제 별거를 시작하여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상황에서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연이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대화를 단절한 채 이혼을 요구하는 등 미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잘못이 있는 점, 반면 피고는 혼인기간 중 좋았던 기억, 이혼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전히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희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다시금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용서하고 다시금 가족의 울타리를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그 파탄의 원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일삼고, 나아가 피고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피고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는 등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본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마음을 돌리고 관계를 회복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가사조사와 조정기일에서도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유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원고에 대한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관계 단절 및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원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원고가 가출한 후 피고와 자녀들을 충분히 보호하거나 배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별거 이후 월 100 ~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2019. 1.부터는 사전처분에 따라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

고 있으나, 2018. 10.부터 3달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록이 있어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양육비 미지급을 우려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